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53
----------	------

2025년 4월 25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신동원 의원(찬성자 36명)

나. 제 안 일 : 2025년 3월 31일

다. 회 부 일 : 2025년 4월 2일

라. 상 정 일 :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동원 의원)

가. 제안이유

- 2025년 2월 11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 사용하도록 신규로 추가함.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 사유(출산)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범위에서 3회(다태아 5회) 분할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 업무 특성상 매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업무가 몰려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사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수권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는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일반적인 ‘행정규칙’으로 보여짐.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항에서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새롭게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을 추가한다(안제24조(특별휴가)제2항).
-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한다(안 별표 3).
-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5회, 사용기한을 1년 이내로 규정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 4. 5. ~ 4. 9.)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미숙아 출산시 휴가일수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관련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 및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하여(120일 이내, 3회→1년 이내, 5회) 규정하며, ‘가족돌봄휴가’ 관련 인용조항을 현행 조항 내용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특별휴가) ①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u>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u>)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u>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u>)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u>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u>)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 ----- <u>--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u> ----- -----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⑪ (생략)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u>10</u>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⑪ (현행과 같음)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u>20</u>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미숙아 출산시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는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정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대통령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성의 저하,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바, 특별휴가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삭제하고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2025.2.11.시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10일(다태아 15일)	○ 20일(다태아 25일)
②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 출산 시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시 90일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 및 분할사용 횟수 확대(120일 이내, 3회→1년 이내, 5회)는 실질적인 휴가 사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와 달리 정함에 따른 ‘법령 우위의 원칙’ 및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내용 검토

1)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안 제24조제2항)

- 안 제24조제2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일수가 확대된 내용(90일→100일)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
일, 한 -----

1. ~ 3. (현행과 같음)

1.~3. (생략)

2)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3)

- 안 별표3 중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10일, 다테아는 15일→20일, 다테아는 25일)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저출생 극복과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u>20일</u>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3)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 및 분할사용 횟수 확대(안 별표3)

- 안 별표3 비고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 및 분할사용 횟수 확대를 위해 현행 사용기한 120일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현행 분할사용 횟수 3회를 5회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u>10</u> (한 번에 둘)	출산	배우자	<u>20</u>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 최근 3년간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현황을 보면 배우자 출산 인원 대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인원은 평균 약 97%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반기별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현황]

구 분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3월말
반기별 배우자 출산 인원	44	63	55	53	63	36	30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인원	44	61	53	50	61	36	29
사용률	100%	96.8%	96.4%	94.3%	96.8%	100%	96.7%

- 휴직, 파견(국내 및 해외), 배우자 출산 이후 임용 및 전입한 경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함.

- 본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업무 효율성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및 분할사용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휴가 사용률을 제고하여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대응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육아휴직 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목적이 출생 직후 배우자와 신생아 자녀돌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사용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120일, 3회 분할)에서 적절한 기한을 정한 후 향후 활용률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추가 확대 필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기한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행안부 예규 개정안이 '25.2.11.부터 시행)

- 다만, 이미 높은 비율(평균 97%)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법령 우위의 원칙’ 관련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와 관련, 동 예규 총칙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사용 가능(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2025.2.11. 개정 시행)하도록 규정(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의 경우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I. 총칙

이 예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중략 ~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120일 또는 15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판례는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법규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1)의 법령에는 이러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그 법규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의 법령에는 이러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 중 법령의 위임을 받아 발령되는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헌재결정례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고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함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헌법재판소 1992. 6. 26. 결정 91헌마25 결정례).

- 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43 페이지)

- 이와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59조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은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행정안전부 부령에 위임하는 명시적인 수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면, 그 내용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반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원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 법률자문(3건) 의견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는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일반적 행정규칙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을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임.(자문 3건 모두 '가능' 의견)

-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분할사용은 3회에 한정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및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생략)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와 다른 내용으로 조례가 규정될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다른 규정 시행에 있어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 간 달리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기한을 ‘1년 이내’로 확대할 경우 가족 돌봄휴가, 육아시간 등 다른 특별휴가들과의 차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출생 직후 배우자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인용조항 정비(안 제24조제16항)

- 안 제24조제16항은 ‘가족돌봄휴가’ 관련 인용조항을 현행 조항 내용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특별휴가)	제24조(특별휴가)
①⑥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①⑥ 제15항에 ----- ----- ----- ----- -----제15항제1호----- ----- ----- ----- -----.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 ----- ----- ----- ----- -----.
--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u>⑮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u> 1. ~ 4. (생략)
--

5) 부 칙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부칙’의 적용례는 개정 규정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의 적용례와 부합하게 규정(미숙아 출산시 적용례 추가 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 칙(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 정 안 의 요 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출산휴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을 현행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별표 3의 비고 중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수정함.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553
----------	-------------

제안연월일 : 2025년 4월 25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출산휴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을 현행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별표 3의 비고 중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 수정안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본문 중 “제14항에”를 “제15항에”로, “제14항제1호”를 “제15항제1호”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
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
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
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
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
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⑰ (생 략)

-----.

-----.

⑰ (현행과 같음)